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포항시보

제778호 2010. 4. 27(화)

- 시장지시사항..... 2
- ◀ 공 고 ▶
-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(제2010-473호) 5
-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(제2010-485호) 6
-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(제2010-486호) 7
- 공 인 공 고(제2010-487호) 8
- 입 법 예 고 공 고(제2010-490호) 9
-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(제2010-4호) 15

회									
람									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4. 26)</p>	<p>○ 읍면동장 순찰 강화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읍면동장은 관내순찰을 보다 적극 실시해 주셔야 하겠음. 녹도(잔디) 책임 관리와, 요철이 심한 인도블럭은 재량 사업비 투입하여 즉시 정비바라며, 간선도로변 주차제지용 페타이어 및 각종 지장물 등을 적극 수거조치 하고, - 간선도로변은 1일 한번 이상 반드시 순찰토록 하시기 바람. <p>○ 직원들이 시정을 잘 숙지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시정 문제은행집을 만들어 배포하기 바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제은행집을 만들어 직원들이 보다 시정을 헤아려 이해하고 숙지하여 대시민 홍보가 가능토록하고,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추진 바람. <p>○ 불법 주·정차 단속 철저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많아지고 있음. 선택과 집중으로 주·정차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확실한 단속과 계도 병행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추진하기 바람. <p>○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 없도록 할 것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.2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, 선거법 위반이 없도록 엄중한 중립을 지키고, 선거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. <p>○ 희망근로 사업을 확실히 관리하기 바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희망근로 참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, 책임자 지정 및 직원을 투입하여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람. 	<p>읍 면 동</p> <p>기획예산과</p> <p>교통행정과 남·북구청</p> <p>자치행정과 (전 부 서)</p> <p>경제노동과 (읍 면 동)</p>

공 고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(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)를 위반한 석유판매업(주유소)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10. 4. 20

포항시공고 제 2010 - 473 호

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

1. 행정처분 내역

업 체 명	대표자	소 재 지	위 반 내 용	처분내역	비 고
구룡포주유소	이영미	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284-2번지	유사석유를 보관 및 판매 (차량용 경유에 등유 분을 약30% 혼유)	과징금 부과 (20,000,000원)	석유판매업 (주유소)

2. 행정처분 일자 : 2010. 4. 20.

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【홍해 죽천 도시계획도로(소2-5) 개설】시행을 위하여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』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,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“포항시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”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0. 04. 26.

포항시 공고 제 2010 - 485 호

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

- 1. 공람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간
- 2. 공람 장소·시간 : 포항시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 (09:00~18:00)
- 3.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내용
 - 사 업 명 : 홍해 죽천 도시계획도로(소2-5) 개설
 - 위 치 : 북구 홍해읍 죽천리 일원
 - 사업내용 : 도시계획도로 개설 (L=557m, B=8m, A=4,626m²)
 - 시행기간 : 인가일 ~ 2011. 12. 30.
 - 시 행 자 : 포항시장
- 4.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 토목담당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전화 : 054-270-5243)

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【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(중1-125, 중3-97) 개설】시행을 위하여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』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,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“포항시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”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0. 04. 26.

포항시 공고 제 2010 - 486호

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

- 1. 공람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간
- 2. 공람 장소·시간 : 포항시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 (09:00 ~ 18:00)
- 3.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내용
 - 사 업 명 :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(중1-125, 중3-97) 개설
 - 위 치 : 남구 상도동·대도동 일원
 - 사업내용 : 도시계획도로 개설 (A=18,039m²)
 - 중1-125 : L=532m, B=24m
 - 중3- 97 : L=430m, B=12m
 - 시행기간 : 인가일 ~ 2011. 12. 30.
 - 시 행 자 : 포항시장
- 4.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 토목담당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전화 : 054-270-5244)

포항시공고 제2010 - 487호

공 인 공 고

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 등록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0. 4. 26

- 1. 등록공인 사용개시일 : 2010. 4. 30
- 2. 등록사유 : 도시·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및 관리
- 3. 등록공인명 및 인영

공 인 명	규 격	인 영	비 고
포 항 시 도 시 주 거 환 경 정 비 기 금 운용관인	한글전서체 2.0Cm정방형		
포 항 시 도 시 주 거 환 경 정 비 기 금 출납원인	한글전서체 1.8Cm정방형		

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10년 4월 27 일

포항시 공고 제 2010 - 490 호

입 법 예 고 공 고

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

전부개정 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9조 개정('09.4.1)에 따라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시책의 입안, 포항의 중·장기 비전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의·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으로
- 현행 조례상 기구의 기능을 행정환경과 지역여건 변화에 맞게 조정 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,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의 제명을 「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포괄적 사항을 협의·조정하는 협의체로서의 기능 부여 (안 제1조, 제2조)

나.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)

다.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)

라. 재정지원 및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(안 제9조, 제10조)

3. 관련법령 :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9조

제29조(시·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)① 생략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·군·구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을 위하여 시·군·구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4. 조례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: 기획예산과장, 주소: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, 전화: 054-270-2172, 팩스: 054-270-2160, E-mail : kwon0629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연락처

다. 기타 필요한 사항

붙 임 : 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조례명 :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**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**

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시책의 입안, 포항의 중·장기 비전과 도시경쟁력 향상 추진을 위한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는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·조정한다.

1. 지역 장기발전의 기본방향, 목표설정 및 관련정책 등 영일만르네상스 추진에 관한 사항
2.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발전 연계·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3. 지역발전과제 발굴 및 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지역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·지원과 대학, 연구소, 기업 등 관련 기관 간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5. 지역 현안과제의 공동 대응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촉위원은 시의회, 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기업체, 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기획예산 과장이 된다.

제4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.
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, 임시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
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자문위원) 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② 자문위원은 지역 국회의원, 포항시의회의장,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제7조(실무위원회) 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둔다.
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해당 분야의 전문가, 관련기업·단체 임직원, 업무관련 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만 연임할 수 있다.
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장은 회의결과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사망,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2. 위원의 신분변동이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
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9조(재정지원)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발전사업의 발굴을 위한 연구과제비 및 각종 경비
2. 정책개발을 위한 선진시설 시찰 및 학회 참석 시 실비
3. 지역대학·연구소·기업 등의 연구개발 위탁비
4. 그 밖에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부대사업비

제10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「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에 의하여 구성된 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.

2010년도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2010년 4월 23일

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0 - 4 호

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

1. 채용내역

채용분야	채용등급	인원	담당업무
카피라이터	전임 “나” 급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각종 광고문안 작성 및 심의 ■ 인터뷰, 연설문, 인사문 작성 등
중국통상·교류	“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국어권 교역상대국과의 통상교섭관련 업무 ■ 외국인 방문 행사관련 통·번역 지원업무
시각디자인	전임 “다” 급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정 홍보물의 디자인 심의 및 개발 (빌보드, 인쇄물, CF동영상 등) ■ 각종 홍보물의 가이드라인 구축 등
기록물 관리	전임 “라” 급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■ 기록물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■ 각부서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등
노점상 단속	시간제 “마” 급	4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불법 노점상 지도 및 단속 ■ 주요 가로변 노상적치물 정비 등

2. 채용(자격)요건

○ 연령 및 거주지

- 연 령 : 제한 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- 거주지 : 노점상단속 분야는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기타분야는 제한 없음)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항목의 요건을 갖춘 자

《자격요건》

구 분	자 격 기 준
카피라이터 (전임 “나” 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자 ■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■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<p>※ 전공분야 : 국어국문학, 신문방송학, 사학 등</p>
중국통상교류 (전임 “나” 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국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석사학위 취득한 후 2년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 ■ 5년이상 국제법, 국제통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■ 중국어 동시통역 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자 ■ 9년이상 중국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■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■ 중국 국적을 가진자로서 현지에서 통상 또는 교류, 번역업무 등에 3년이상 근무한 자 ■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<p>※ 우대조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현지에서 국제교류, 기업유치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- 중국어 이외 외국어 활용 가능한 자 -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<p>※ 기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어 전문가와 1:1 회화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 평가 -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첨부(HSK 등 시험성적표)

구 분	자 격 기 준
시각디자인 (전임 “다” 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자 ■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■ 7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■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※ 전공분야 : 시각디자인 관련 학과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※ 경력분야 : 광고기획사, 기업체 홍보실, 시각디자인 전문업체 등</p>
기록물관리 (전임 “라” 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■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 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
노점상 단속 (시간제 “마” 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

3. 채용(계약)기간

- 카피라이터, 중국통상·교류, 시각디자인, 기록물관리 분야
: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
- 노점상단속 분야 : 최초 계약일로부터 '10. 12. 31까지
- ※ 분야별 업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내 연장 가능

4. 시험방법

- 1차 시험 : 서류전형
 -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
- 2차 시험 : 면접시험 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5. 응시원서 접수

- 접 수 기 간 : 2010. 5. 3(월) ~ 5. 6(목) 18:00까지(공휴일 제외)
- 원서 접수처 :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(인사담당 ☎ 054-270-2081)
- 접 수 방 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는 받지 않음)

6. 시험일정

- 서류합격자 발표 : 2010. 5. 12(수),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
- 면접시험 일시 : 2010. 5. 14(금),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10. 5. 19(수),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

7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 (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)
 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(3×4cm) 2매
 - 응시수수료 : “나” 급, “다” 급은 7,000원, “라” , “마” 급은 5,000원
상당의 포항시수입증지 부착
- 이력서 1부(학력, 자격, 경력, 상훈 등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)
- 자기소개서 1부 (A4용지 2매 이내)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- 주민등록초본 1통(최근 5년이내 전·출입 사항 및 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)
- 경력증명서 각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, 원본지참)
 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

8. 보수 및 복무

- 연 봉
 - 카피라이터 분야(전임 “나” 급) : 35,778천원
 - 중국통상·교류 분야(전임 “나” 급) : 35,778천원
 - 시각디자인 분야(전임 “다” 급) : 31,167천원
 - 기록물관리 분야(전임 “라” 급) : 27,462천원
 - 노점상단속 분야(시간제 “마” 급) : 13,559천원
 - ※ 시간제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수 당
 - 『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에 의하여 별도 수당 지급
- 근무시간
 - 카피라이터, 중국통상·교류, 시각디자인, 기록물관리 분야 : 주 40시간
 - 노점상단속 분야(시간제 “마” 급) : 주 35시간 이하
- 복 무
 - 기타 복무사항은 『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』 등을 준용

9. 응시자 주의사항

- 응시원서는 공고문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.
 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 -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면접시험장에 참석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(☎ 054-270-208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홈페이지(www.ipohang.org)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.

응 시 원 서

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

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※ 응시번호				응시분야				사 진 (1)	
성명	(한 글)		주민등록 번호				6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(3cm × 4cm)		
	(한 자)								
주소		(전 화) (휴대폰)							
학 력	부 터	까 지	학 교 명		전 공 학 과		학 위 명		
자격 면허	취득일자	종 별		병 역	군 별	계 급	복무기간	미필사유	
주 요 경 력	기 간		직 장 명		직 위		담 당 업 무		
포항시수입증지 “나”, “다 “급 7,000원 “라”, “마 “급 5,000원		귀 시 의 ()분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. 2010 년 5 월 일 출 원 인 (서명 또는 인)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							

응 시 표	성 명	한 글			※응시번호				사 진 (2) 위와 동일사진 (3cm×4cm)
		한 자			응시분야				
	주민등록번호								
		2010 년 5 월 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							

(뒷 면)

응시원서 작성요령

- 1.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.
- 2.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- 3.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.
 - ① 응시분야 : 공고문을 참고하여 "응시분야" 를 기재
 - ② 전 화 : 상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(휴대폰 등)
 - ③ 학 력 :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(이상)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,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(기타 재학·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)
 - ④ 주요경력 : 당해분야 경력증명서 제출한 경력만 인정
 - ⑤ ※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
 - ⑥ 수입증지란에는 “나” 급, “다” 급은 7,000원, “라” , “마” 급은 5,000원 상당의 포항시 수입증지를 첨부(수입증지는 포항시청 1층 민원실에서 판매)

자 기 소 개 서

○ 응시분야 :

○ 성 명 :

2010. 5. .

작성자

(서명 또는 인)

※ 작성요령(예)

-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, 가족사항, 좌우명, 군복무,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, 향후 업무수행 계획,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
-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

